

2009년도 제3차 「저출산고령사회 포럼」

- 일시 : 2009. 12. 28(월) 13:30-16:30
- 장소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제1회의실

2009년도 제3차 「저출산고령사회 포럼」

■ 일 시: 2009. 12. 28(월) 13:30-16:30

■ 장 소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제1회의실

■ 프로그램:

좌장: 정경희(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)

13:30~14:50 주제발표

발표1: “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”

우석진(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)

발표2: “부모 보험 제도 도입 방안”

신윤정(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)

14:50~15:00 coffee break

15:00~15:30 지정토론

발표1: 김수봉(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)

발표2: 신현웅(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부연구위원)

15:30~16:30 종합토론 및 폐회

목 차

- ▶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
경제적 효과 1

- ▶ 부모 보험 제도 도입 방안 21

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

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

2009. 12.

김현숙 (숭실대 경제학과)

우석진 (명지대 경제학과)

연구동기

-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고령화가 촉진되어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
- 정부의 출산율제고 정책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(Kohler, Billari and Ortega(2006) 참조)
- 조세 및 정부보조금 지원정책, 보육지원정책,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 등이 모두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의 크기는 작음

연구동기(계속)

- 사회전체의 인식전환과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양육과정에 대한 사회전체의 역할분담과 참여와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

연구질문

-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이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내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
- 한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생산 및 고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고용위축과 산출하락문제의 심각성을 역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
- 또한 탄생이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행위를 살펴봄으로써 단기적인 고용 및 생산효과의 계산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보는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

- 출산율의 하락이 장기적인 잠재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국가 내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

우리나라의 출산현황

- (낮은 합계출산율)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.0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 1.19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
- (주 출산연령대의 고령화) 주 출산연령층이 20~24세에서 최근 30~34세로 고령화되는 추세
- (저출산의 원인)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다음과 요인들이 있음
 -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
 - 국민소득 상승, 교육수준 향상, 보건의료 수준 발달, 영아사망을 급감, 少자녀 선호의 가치관의 변화 등의 사회경제발전
 -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

-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여건 및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

저출산의 문제점

- KDI(2004), 박형수·류덕현(2006), 조세연구원(2007)에 따르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(<표 S-1> 참조)
- 1인당 GDP의 경우 4%대에서 1.8~1.9%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

<표 S-1>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한 비교

(단위: %)

| | 박형수·류덕현 (2006) | KDI (2004) | | 조세연(2007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TFP=1.5% | TFP=2.0% | |
| 2011~20 | 4.04 | 4.19 | 4.83 | 3.94 |
| 2021~30 | 3.02 | 3.06 | 3.73 | 3.03 |
| 2031~40 | 2.09 | 2.28 | 2.93 | 2.41 |
| 2041~50 | 1.90 | 1.91 | 2.56 | 1.84 |

분석방법론

- 출산이 국민총생산과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은 아직 미개발
 - OECD 어떤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, 학문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식되는 방법론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님
- (쉬운 추계방법) 최종 국내수요(수입제외)를 인구로 나눈 인구 1인당 산출액은 37,829,419원이고, 인구 1인당 취업인 수는 0.372명

- (쉬운 접근의 한계) 위와 같은 거시적 추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출산정책의 효과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 - 출생이후 각 생애주기별로 도출되는 다양한 관련 소비 및 산출액, 취업인원 수를 살펴보지 못함
 - 일종의 평균적인 분석에 그칠 수 있어 추가적 자녀 한명의 출산으로 인한 한계효과 추정에 제한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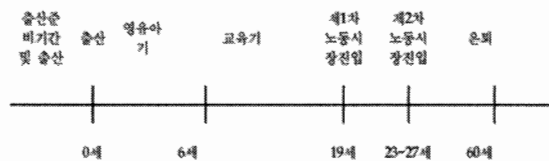
분석방법론

- (방법론 개요)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단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좀 더 자세하고 풍부한 분석을 수행
- 분석 1단계: 생애주기 분류
 - 분석 2단계: 해당 생애주기의 관련산업 정의
 - 분석 3단계: 해당 산업의 해당 연령층의 최종수요 추정
 - 분석 4단계: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당산업의 해당연령 1명당 고용, 취업 및 산출효과 추정
 - 분석 5단계: 생애주기별, 관련 산업별 효과 집계(agggregation) 및 출산정책 시뮬레이션

1단계

- (분석 1단계) 한 사람의 인생을 소비, 노동공급 등에 따라서 출산, 영유아기, 교육기, 노동시장기, 은퇴시기 등으로 분류

[그림 S-9] 생애주기 분류



2단계

- (분석 2단계) 해당 연령기에 관련된 산업들을 가능한 한 세세하게 정의
- 예를 들어 영유아기 관련 소비산업은 소아과 의료서비스, 의류 및 기저귀, 영유아기 장난감 및 서적, 공적 보육 및 교육서비스로 정의(<표 S-2> 참조)
 - 특정 연령과 매칭이 되지 않는 산업의 경우,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로 따로 분류

<표 S-2> 영유아기의 소비활동

| | 관련 재화 및 서비스 | 내용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영유아기 | -소아과 의료서비스 - 의류 및 기저귀 | 소아기의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서비스 |
| | -영유아기 장난감 및 서적 | |
| | -영유아 공적 보육 및 교육서비스 |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 수에 근거하여 시설투입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하여 산정 |

3단계

- (분석 3단계) 해당 연령층에 해당 산업의 국내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를 추정
- 예를 들어 분유 지출의 경우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기의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규모와 고용규모를 파악(<표 S-3> 참조)

<표 S-3 > 분유기업의 매출액 및 종업원수

(단위: 백만원 명)

| 분유회사 | 분유매출액 | 분유생산관련 종업원수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남양유업 | 158,921 | 410 |
| 매일유업 | 157,383 | 371 |
| 일동후디스 | 75,000 | 343 |

4단계

- (분석 4단계)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당 연령층 1명당 산출 및 고용효과를 추정
 - 고용(유발)효과, 취업(유발)효과, 생산유발효과 등을 한국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

<표 S-4> 아동 1인당 분유 및 이유식 소비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

| | | (단위: 원, 명) |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구분 | | 산출 및 최종수요 | 고용 |
| 분유 (연간) | 산업 내 | 584,347 | 0.002 |
| | 전산업 | 1,591,312 | 0.011~0.014 |

5단계

- (분석 5단계) 위에서 구해진 효과들을 이용하여 출산정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출산~영유아기, 출산~학령기, 출산~사망 별로 집계
- (여성의 노동공급 변화) 위의 주요 분석 외에도 출산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출산모의 노동공급 변화가 고용과 생산에 주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 하였음

투입산출표

〈표 N-5〉

생산유발계수표 : (I-A)'형

| | 농림어업 | 광공업 | 기타산업 | 합계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농림어업 | 1.0695 | 0.0833 | 0.0248 | 1.1776 |
| 광공업 | 0.6495 | 2.3852 | 0.5322 | 3.5669 |
| 기타산업 | 0.3157 | 0.4718 | 1.4775 | 2.2651 |
| 합계 | 2.0347 | 2.9403 | 2.0345 | 7.0095 |

〈표 N-6〉

생산유발계수의 의미

| | 1 부문 | 2 부문 | 3 부문 | 합계 |
|------|--|--|--|--|
| 1 부문 | F_{11}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·간접적 으로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| F_{21}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·간접적 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| F_{31}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·간접적 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| $F_{11} + F_{21} + F_{31}$ 자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를 충족하려면 재·역물 류가 필요한 재·역물 류 총량이 위하여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|
| 2 부문 | F_{21}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| F_{22}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·간접적 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| F_{32}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| $F_{21} + F_{22} + F_{32}$ 자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를 충족하려면 재·역물 류가 필요한 재·역물 류 총량이 위하여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|
| 3 부문 | F_{31}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| F_{32}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| F_{33}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·간접적 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| $F_{31} + F_{32} + F_{33}$ 자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를 충족하려면 재·역물 류가 필요한 재·역물 류 총량이 위하여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|
| 합계 | $F_{11} + F_{21} + F_{31}$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·간접적 으로 필요한 전 부문의 산출단위 | $F_{21} + F_{22} + F_{32}$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·간접적 으로 필요한 전 부문의 산출단위 | $F_{31} + F_{32} + F_{33}$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·간접적 으로 필요한 전 부문의 산출단위 | |

임신, 출산 및 영유아기

- 임신, 출산 및 영유아기와 관련된 산업으로 의료서비스(소아과, 산부인과 등),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, 식품소비(분유, 이유식), 기타 소비로 분류
- 출산,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자녀 1명당 약 0.17개의 직/간접적 일자리와 약 4천 4백만원 정도의 산출효과가 있음(<표 S-5> 참조)

<표 S-5 > 출생-영유아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종합

| 출생-영유아기 | 산출효과 | 일자리 수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의료서비스 | 9,839,735 | 0.0455 |
|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| 25,523,292 | 0.0970 |
| 식품소비(분유, 이유식) | 3,560,452 | 0.0190 |
| 기타 소비 | 5,304,886 | 0.0060 |
| 총계 | 44,248,366 | 0.1675 |

청소년기 및 청년기

- 연령별로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로 분류하였고, 산업으로는 크게 공교육 부문, 사교육 부문, 소비지출 부문으로 분류
- 소비지출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조사(2008)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, 소비지출의 세부문은 가계조사 항목과 산업연관표의 분류를 매칭하는 방법으로 분류

- 먼저, 교육부문의 효과는 자녀 1명이 창출하는 일자리수가 약 0.56개이고
 생산효과는 연간 3천 2백만원에 이룸(<표 S-6> 참조)
- 일자리 창출에는 공교육의 효과가 사교육의 효과보다 큼
 - 일자리 창출 및 생산효과가 가장 큰 시기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

<표 S-6> 학령기 교육의 일자리 및 생산효과

| | | 1인당 일자리 | 1인당 생산효과 |
|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초등학교 | 공교육 | 0.069 | 3,672,000 |
| | 사교육 | 0.066 | 3,799,819 |
| 중학교 | 공교육 | 0.094 | 5,447,368 |
| | 사교육 | 0.067 | 3,896,447 |
| 고등학교 | 공교육 | 0.122 | 7,083,070 |
| | 사교육 | 0.058 | 3,343,243 |
| 대학이상 | 공교육 | 0.086 | 4,993,287 |
| 계 | | 0.562 | 32,235,234 |

-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0.16개인 것으로 추정되었음
- 초등학교가 약 0.03, 중학교가 약 0.02, 고등학교가 0.04, 대학생이 0.06으로
 연령에 따라 U-자형 모형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여줌

<표 S-7>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

| 가계조사 | 초등학교 | 중학교 | 고등학교 | 대학이상 | 계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육류및육가공품 | 0.00030 | 0.00041 | 0.00037 | 0.00037 | 0.00145 |
| 난농품 | 0.00020 | 0.00015 | 0.00008 | 0.00004 | 0.00047 |
| 수산물 | 0.00023 | 0.00007 | 0.00027 | 0.00063 | 0.00120 |
| 곡물 | 0.00005 | 0.00009 | 0.00005 | 0.00008 | 0.00027 |
| 별과정및곡수류 | 0.00039 | 0.00041 | 0.00037 | 0.00039 | 0.00156 |
| 유지방조미료 | -0.00006 | 0.00002 | 0.00015 | 0.00012 | 0.00023 |
| 과실및채소가공품 | 0.00055 | 0.00039 | 0.00062 | 0.00122 | 0.00278 |
| 차및음료 | 0.00006 | 0.00004 | 0.00004 | 0.00007 | 0.00021 |
| 편의제이복신발 | 0.00261 | 0.00285 | 0.00299 | 0.00489 | 0.01334 |
| 종이 | 0.00004 | 0.00003 | 0.00002 | 0.00001 | 0.00010 |
| 의약품및장품 | -0.00003 | -0.00002 | 0.00016 | 0.00033 | 0.00044 |
| 가정용전기기기 | 0.00008 | -0.00003 | -0.00006 | 0.00002 | 0.00001 |
| 주류 | 0.00009 | -0.00015 | 0.00036 | 0.00048 | 0.00078 |
| 의식 | 0.01657 | 0.01509 | 0.02200 | 0.02721 | 0.08087 |
| 교복 | 0.00794 | 0.00318 | 0.01296 | 0.02451 | 0.04859 |
| 교양오락서비스 | 0.00111 | -0.00018 | 0.00014 | 0.00416 | 0.00523 |
| 계 | 0.03011 | 0.02238 | 0.04053 | 0.06453 | 0.15752 |

노동시장참여기간

- 위에서 분류한 통상적인 소비지출과 추가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에 대해서 분석
- 학령기 이후 노동시장 참여기간의 소비지출을 통해서 성인 1명당 약 0.067명의 일자리와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음

<표 S-8> 노동시장참여기간 소비지출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

| | | 산출 및 최종수요(원) | 고용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노동시장참여기간 일반 소비 | 전산업 | 10,020,415 | 0.067 |

- 결혼관련 산업의 경우 성인 1명당 약 0.02명의 일자리 창출과 1백 25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

<표 S-9> 결혼산업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

| | | 산출 및 최종수요(원) | 고용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결혼서비스 | 산업내 | 606,500 | 0.015 |
| | 전산업 | 1,252,113 | 0.019 |

은퇴기 이후

- 정부가 고령친화사업 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고령친화제품으로 분류한 제화와 서비스를 은퇴기 이후 소비품목으로 설정하여 산출 및 고용효과를 분석
- 노인 1명당 약 0.13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1천 4백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(<표 S-11> 참조)

<표 S-10> 고령친화사업의 생산 및 고용

| 부문 | 노인 1인당 산출 | 노인 1인당 취업인원 | 노인1인당 취업유발인원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료서비스 | 7384146.759 | 0.044273568 | 0.068659919 |
| 요양산업 | 214364.237 | 0.001285334 | 0.001993220 |
| 기기산업 | 588870.629 | 0.001249024 | 0.003479140 |
| 정보산업 | 12754.267 | 3.50532E-05 | 7.99979E-05 |
| 여가산업 | 1321983.137 | 0.014811631 | 0.022962372 |
| 금융산업 | 1471041.956 | 0.005160795 | 0.009173542 |
| 주택산업 | 15867.343 | 6.94671E-06 | 2.54609E-05 |
| 한방산업 | 478711.020 | 0.001351962 | 0.002801337 |
| 농업 | 91645.517 | 0.002135129 | 0.002582179 |
| 의료비 제외 | 4195238.105 | 0.026035876 | 0.043097248 |
| 교통신용 | 350328.505 | 0.002629665 | 0.003316559 |
| 식품 | 461493.681 | 0.000845264 | 0.005240252 |
| 의약품 | 1272420.476 | 0.002136611 | 0.006237917 |
| 장묘산업 | 584180.583 | 0.003502765 | 0.005431879 |
| 의류 | 278664.987 | 0.000728936 | 0.001642525 |
| 교육산업 | 32587.403 | 0.000465883 | 0.000539310 |
| | 2979675.635 | 0.010309123 | 0.022408442 |
| 전계 합 | 14,559,060.000 | 0.080000000 | 0.130000000 |

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

- 소비지출이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생애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는 산업에 자동차, 금융서비스, 주택소비를 포함시킴
-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약 0.005개, 금융은 약 0.02개, 주택은 약 0.04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음
- 한편, 생산효과의 경우 자동차와 금융이 1백 3십만원, 주택건설이 약 1백 6십만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

<표 S-11> 자동차, 금융, 주택 산업의 1인당 생산 및 고용

| | | 산출 및 최종수요(원) | 고용(명)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자동차 산업 | 산업 내 | 483,892 | 0.00118 |
| | 전산업 | 1,314,506 | 0.00520 |
| 금융 및 보험 | 산업 내 | 715,488 | 0.01200 |
| | 전산업 | 1,294,757 | 0.02000 |
| 주택건설 | 산업 내 | 809,115 | 0.00072 |
| | 전산업 | 1,657,999 | 0.04000 |

총괄

□ 일자리창출 효과의 경우 약 1.15개의 일자리가 자녀 1명의 출산을 통해 생애 주기동안 창출

<표 S-12> 전체 산업에 미친 고용효과

| 시기 | 의료 | 공교육 | 사교육 | 식음소비 | 소비일반 | 결혼 서비스 | 자동차 | 금융 | 주택 | 음의 효과 | 총계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
| 출생-영유아기 | 0.0455 | 0.097 | | 0.019 | 0.006 | | | | | | 0.1675 |
| 초등학교 | | 0.069 | 0.066 | | 0.030 | | | | | | 0.1650 |
| 중학교 | | 0.094 | 0.067 | | 0.022 | | | | | | 0.1830 |
| 고등학교 | | 0.122 | 0.058 | | 0.040 | | | | | | 0.2200 |
| 대학교 | | 0.085 | | | 0.064 | | | | | | 0.1490 |
| 노동시기 | | | | | 0.067 | 0.019 | | | | -0.019 | 0.0670 |
| 은퇴기 | 0.0700 | | | | 0.060 | | | | | | 0.1300 |
| 시기무관 | | | | | | | 0.0052 | 0.02 | 0.04 | | 0.0652 |
| 총계 | 0.1155 | 0.467 | 0.191 | 0.019 | 0.289 | 0.019 | 0.0052 | 0.02 | 0.04 | | 1.1467 |

□ 한편 산출효과외의 경우 자녀 1명이 생애주기 동안 약 12억 2천만원의 효과를 가져옴

<표 S-13> 전체산업에 미친 산출효과

| 시기 | 의료 | 공교육 | 사교육 | 식음 소비 (분류 및 आयु-각) | 소비일반 | 결혼 서비스 | 자동차 | 금융 | 주택 | 음의 효과 | 총계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출생-영유아기 | 9,889,738 | 25,523,292 | | 3,586,432 | 5,394,867 | | | | | | 44,284,326 |
| 초등학교 | | 27,268,170 | 43,996,908 | | 23,447,020 | | | | | | 94,712,098 |
| 중학교 | | 36,342,535 | 21,689,541 | | 9,989,971 | | | | | | 67,122,047 |
| 고등학교 | | 21,240,209 | 10,029,728 | | 15,472,956 | | | | | | 46,742,893 |
| 대학교 | | 19,973,348 | | | 32,489,740 | | | | | | 52,412,909 |
| 노동시기 | | | | | 403,856,412 | 12,521,130 | | | | -20,176,286 | 396,201,266 |
| 은퇴기 | 131,782,205 | | | | 168,123,495 | | | | | | 300,005,700 |
| 부분할 | | | | | | | | | | | 883,634,689 |
| 시기무관 | | | | | | | 105,360,480 | 103,590,639 | 132,407,920 | | 341,349,039 |
| 총계 | 121,671,943 | 113,347,529 | 61,685,578 | 3,586,432 | 563,893,961 | 12,521,130 | 105,360,480 | 103,590,639 | 132,407,920 | | 1,224,983,689 |

합계출산율에 따른 생산 및 고용효과 가상실험

- 정부정책으로 인해 출산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가정 하에 추가로 출생한 아동의 소비증가가 가져올 일자리창출효과와 산출효과를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계
 - 분석의 용이성과 명확성을 위해서 2010년에 합계출산율이 5%, 10%, 20%, 30%, 33% 증가하였을 때의 시나리오 하에서 출산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계
 - 33%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.2라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인 1.6에 도달하는 증가율
- 출산정책의 효과를 영유아기, 중기학업연령기, 노동시장기 및 은퇴기로 나누어서 추계결과를 제시

<표 S-14> 출산율 제고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

(단위: 명)

| | | 5% | | 10% | | 20% | | 30% | | 33%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| 총합 | 평균 | 총합 | 평균 | 총합 | 평균 | 총합 | 평균 | 총합 | 평균 |
| 영유아기 | 영유아기 까지 | 3,670 | 612 | 7,339 | 1,223 | 14,679 | 2,446 | 22,018 | 3,670 | 24,220 | 4,037 |
| | 학령기 까지 | 19,378 | 881 | 38,756 | 1,762 | 77,512 | 3,523 | 116,268 | 5,285 | 127,895 | 5,813 |
| | 학령기만 | 15,708 | 982 | 31,417 | 1,964 | 62,833 | 3,927 | 94,250 | 5,891 | 103,675 | 6,480 |
| 노동기 | 노동기 까지 | 20,846 | 336 | 41,692 | 672 | 83,384 | 1,345 | 125,075 | 2,017 | 137,583 | 2,219 |
| | 노동기만 | 1,468 | 37 | 2,936 | 73 | 5,871 | 147 | 8,807 | 220 | 9,688 | 242 |
| 은퇴기 | 은퇴기 까지 | 23,884 | 310 | 47,768 | 620 | 95,535 | 1,241 | 143,303 | 1,861 | 157,633 | 2,047 |
| | 은퇴기만 | 3,038 | 203 | 6,076 | 405 | 12,152 | 810 | 18,228 | 1,215 | 20,051 | 1,337 |
| 시기무관 | | 1,428 | | 2,857 | | 5,714 | | 8,571 | | 9,428 | |

<표 S-16> 출산율 제고 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

(단위: 십억원)

| | | 5% | | 10% | | 20% | | 30% | | 33%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| 총합 | 평균 | 총합 | 평균 | 총합 | 평균 | 총합 | 평균 | 총합 | 평균 |
| 영유아기 | 영유아기 까지 | 969 | 162 | 1,939 | 323 | 3,878 | 646 | 5,816 | 969 | 6,398 | 1,066 |
| 학령기 | 학령기 까지 | 5,994 | 272 | 11,988 | 545 | 23,975 | 1,090 | 35,963 | 1,635 | 39,560 | 1,798 |
| | 학령기만 | 5,024 | 314 | 10,049 | 628 | 20,098 | 1,256 | 30,147 | 1,884 | 33,161 | 2,073 |
| 노동기 | 노동기 까지 | 14,607 | 236 | 29,215 | 471 | 58,430 | 942 | 87,645 | 1,414 | 96,409 | 1,555 |
| | 노동기만 | 8,614 | 215 | 17,227 | 431 | 34,454 | 861 | 51,681 | 1,292 | 56,849 | 1,421 |
| 은퇴기 | 은퇴기 까지 | 19,359 | 251 | 38,718 | 503 | 77,436 | 1,006 | 116,154 | 1,506 | 127,770 | 1,659 |
| | 은퇴기만 | 4,752 | 317 | 9,503 | 634 | 19,007 | 1,267 | 28,510 | 1,901 | 31,361 | 2,091 |
| 사기무관 | | 7,478 | | 14,957 | | 29,914 | | 44,871 | | 49,358 | |

요약 및 결론

- 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와 생산유발액 수준에 대해 한 개인이 출생으로부터 영유아기, 교육기, 노동시장 참여시기, 은퇴이후의 소비시기를 거치면서 영위하는 소비활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소비활동을 통해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와 생산수준을 측정
- 각 생애주기별 소비항목은 해당시기의 대표적인 소비항목으로 구성되었고, 일부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은 본 연구에서 제외

- 시기별 산정을 모두 종합할 경우, 한 개인은 탄생과 함께 노동활동을 접고 은퇴하여 약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자리는 1.15명, 전체 생산유발액은 12억2천만원을 창출
 - 영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거의 1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평균할 경우 출생 후 20년 동안에 걸쳐 매년 약 0.05명의 일자리를 창출
- 연구결과로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단기적으로도 이미 일자리수가 줄어들고 생산이 위축되는 것을 확인
-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술과 산업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 일자리 수와 생산증가의

효과가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음

- 그러나 적어도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한 개인이 생애주기에 걸쳐 창출하는 일자리 수와 생산액은 출생이 발생한 시점부터 그리 길지 않은 기간내에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
- 저출산 문제가 미래 경제활력만이 아니라 단기간 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
-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정책을 입안하고,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됨

부모 보험 제도 도입 방안

부모 보험 제도 도입 방안

1.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

- 한국의 저출산 요인은 “사회직장요인>자녀요인>소득요인>가치관요인” 순서로, “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” 없이 기대 가능한 출산율 수준은 초저출산 국가의 합계 출산율 수준보다도 낮은 1.26명으로 나타났음 (삼성경제연구소, 2005, 2006)
 - ※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08년 현재 1.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
- OECD 국가의 경우,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률이 높음. 이는 일 가정 양립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용이한 국가일수록 출산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
-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률 수준 제고와 더불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함. 이를 위해서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통하여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<표 1> OECD 국가의 출산률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(2006년)

(단위: 명, %)

| | 스웨덴 | 덴마크 | 네덜란드 | 프랑스 | 영국 | 한국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합계출산율 | 1.85 | 1.84 | 1.72 | 1.98 | 1.84 | 1.13 |
| 여성경제 활동참여율 | 81.5 | 81.7 | 75.1 | 73.4 | 74.9 | 60.0 |

- 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의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
 -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극히 제한적인 여성 취업자만이 육아 휴직 급여를 제공 받고 있음
 - ※ 2007년 현재 여성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32.7%, 여성 임금 근로자 중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47.5% (고용보험통계, 2007)
 - 여성 취업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및 직장 내 여성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율도 극히 저조한 실정임
 - ※ 2007년 현재 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여성 근로자 60,964명 중 육아 휴직을 신청한 여성은 20,875명으로 34.2%에 불과 (고용보험통계, 2007)
- 현재와 같이 고용 보험 체계 안에서 육아 휴직 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

사각지대에 속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

※ 30~40대 기혼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52.1%, 비정규직 근로자는 47.9% (여성가족패널조사, 2007)

- 여성 근로자의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고용 보험 가입자 뿐 만아니라 근로자 전체 여성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
- 현재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365일 중 매월 50만원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노동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여성 육아 휴직 활용도를 낮추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
 -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여성의 경우 낮은 휴직 급여로 인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
 - 부부 중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부인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국내 남성 육아 휴직 사용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- 육아 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적 성격의 “부모 보험”제도를 도입하여 고용 보험 가입자 이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함
- 특히 현재 저출산 정책은 주로 자녀 양육 비용 경감 및 보육 환경 개선에 대부분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바, 부모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
 - 2009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분야 예산 (47,618.9억원) 중 “결혼·출산·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” 사업은 총 40,412.8억원 (84.9%)인 반면에 “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 사회 문화 환경 조성” 사업은 총 4,112.8억원 (8.64%)임

2. 해외 사례: 스웨덴의 부모 보험제도 운영 현황¹⁾

(1) 부모 보험의 혜택

- 부모 급부금 (Parental cash benefit for the birth of a child)
 - 자녀 출생 시점부터 8세 될 때 까지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당 480일 동안 지급
 - 처음 390일간은 평상시 급여의 80% 지급 (질병급부금과 동일한 수준,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일당 874 SEK), 나머지 90일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인 일당 180 SEK²⁾

1) 스웨덴 사회보험청(2008) “Social Insurance in Figures, 2008”

2) 874 SEK는 150,171원, 180 SEK는 30,928원 (2009년 8월 현재 환율 1 SEK=171.8원 적용)

- 노동시간은 전체, 3/4, 1/2, 1/4, 1/8로 조절 가능하며 급여 수준은 노동시간에 맞게 조정됨
- 480일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최소 6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
- Speed premium: 첫째 아이를 낳은 후 24개월 이내에 다시 출산할 경우 첫째 아이를 낳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계속 지급함으로써 2명 이상의 아이를 가지는 인센티브 제공

□ 임신급여 (Pregnancy cash benefit)

-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임신부의 경우, 고용주가 임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를 주지 못할때 임신급여를 받을 수 있음 (출산 2개월 전 최대 50일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음)
- 근로환경법에 의하여 임신 중에 할 수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임신부의 경우 작업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 수 만큼 임신 급여를 받을 수 있음
- 평상시 급여의 80% 지급 (질병급부금과 동일한 수준)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일당 655 SEK³⁾

□ 일시적인 부모급부금 (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)

-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, 자녀를 규칙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아플 경우, 혹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부모가 병원을 가야만 하는 경우 “일시적인 부모 급부금”을 요청할 수 있음
- 통상적으로 6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, 자녀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추가적으로 60을 더 사용할 수 있음
- 평상시 급여의 80%가 지급되며 노동시간을 전체, 3/4, 1/2, 1/4, 1/8로 조절 가능하며 급여는 이러한 노동시간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어 지급됨
- 자녀의 질병 상태에 따라 연령은 12세 이상까지 확대 가능함
- 자녀 방문 휴가 (contact days):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부모교육훈련, 유치원 및 방과후 학교를 방문하기 위하여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

(2) 재원 부담

-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음의 4가지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지원 (부모보험, 아동수당 등), ② 질병과 장애의 경우를 위한 지원, ③ 노인을 위한 지원 (노인 연금 등), ④ 근로자 안전을 위한 지원 (작업재해보험, 실업수당 등)
- 스웨덴 사회보험제도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, 고용자 및 자영업자의 부담금, 피보험자의 기여금(실업 보험의 경우)으로 충당하고 있음

3) 655 SEK는 112,542원 (2009년 8월 현재 환율 1 SEK=171.8원 적용)

- 부모보험의 경우 고용주 기여금이 전체 재원의 85%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나머지 재정 소요의 15%를 부담함
 - 고용주 기여금의 경우, 고용주 수입의 2.2%, 자영업주의 경우 본인 수입의 2.2%를 부담함
 - 2006년 부모보험에 소요된 비용은 26,094백만 SEK로 GDP의 0.9%, 정부 지출의 3.42%를 차지함 <부록 표1 참조>

3. 출산률 제고 관련 효과성

- 부모보험은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출산에 따른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여성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사회적으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취업률을 제고시키며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를 가능하게 함
- 스웨덴은 1970년대 이전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“부모보험”을 비롯한 적극적인 모성보호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2007년 현재 1.85명의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됨
 - 스웨덴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현재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81.5%로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
 - 스웨덴이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출산율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요인은 “부모보험제도”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분석이 많음 (김주숙, 1997)⁴⁾

4. 부모 보험 제도설계

(1) 부모 보험의 세 가지 시나리오

- 대상자: 여성 고용 보험 가입자 (여성 인구의 15.7%), 여성 임금 근로자 (여성 인구의 33.3%), 여성 취업자 (여성 인구의 52.1%)의 세가지 시나리오 제시
- 이용율은 산전후 휴가 사용자 대비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 (34.2%)을 최소 이용율로 가정하고, 50%, 75%, 100% 로 확대 가정
- 급여 액수는 임금의 50%와 80%의 정율제로 지급하는 두 가지 방안 제시
- 급여 일수는 만 0~만 5세 취학 전 자녀 1명당 365일
- 혜택 범위: 제도 도입 초기에는 “부모 급부금”만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

4) 김주숙 (2000) “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,” 한국사회복지학 No. 40

<표 2> 부모 보험 도입 방안 시나리오

| 시나리오 | 대상자 | 이용율 | 급여 액수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안 | 여성 고용 보험 가입자 (여성 인구의 15.7%) | 34.2%, 50%, 75%, 100% | 임금의 50%, 80% |
| 2안 | 여성 임금 근로자 (여성 인구의 33.3%) | 34.2%, 50%, 75%, 100% | 임금의 50%, 80% |
| 3안 | 여성 취업자 (여성 인구의 52.1%) | 34.2%, 50%, 75%, 100% | 임금의 50%, 80% |

(2) 향후 제도 설계 시 논의 사항

- 급여 액수를 임금수준에 따른 정율제, 정액제, 정율제와 정액제의 혼합 방식 중 어떠한 방안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
- 최대 급여 수준과 최소 급여 수준 설정 필요
- 부부의 육아 휴직 공동 사용 의무화 적용 (예: 부부 중 일방이 최소 특정 일수의 휴직 사용 의무화)
- 휴직 기간 및 근무 시간의 탄력적 사용
 - 휴가 기간은 자녀 연령 만0~만5세 기간 중 탄력적으로 총 365일 사용
 - 근무시간의 전체, 1/2, 1/3, 1/4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 수준 조정
- “임신급여,”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한 “일시적인 부모 급부금,” 자녀의 유치원 및 학교를 방문하기 위한 “자녀 방문 휴가” 등 혜택 범위 확대

5. 소요 예산

- 1안: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(<부록 표 3>참조)
 - 현재 수준의 육아 휴직 이용율(34.2%)을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%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2천 1백억원~2천 3백억원의 예산 소요
 -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%로 확대 시 연간 3천 4백억~3천 7백억원 예산 소요
 - 육아 휴직 이용율을 50%로 가정할 경우 월 임금의 50%를 급여로 제공한다면 연간 약 3천 1백억~3천 3백억원 예산 소요
 -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% 확대 시 연간 약 5천억~5천 4백억원 예산 소요
 -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가 육아 휴직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%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6천 2백억~6천 7백억원 예산 소요

-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% 확대 시 연간 약 1조~1조 1천억원 예산소요

□ 2안: 여성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(<부록 표 4> 참조)

- 현재 수준의 육아 휴직 이용율(34.2%)을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%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4천 5백억~4천 9백억원의 예산 소요
 -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%로 확대 시 연간 7천 2백억~7천 8백억 예산소요
- 육아 휴직 이용율을 50%로 가정할 경우 월 임금의 50%를 급여로 제공한다면 연간 약 6천 6백억~7천 1백억원 예산 소요
 -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% 확대 시 연간 약 1조 1천 억원 예산 소요
- 여성 임금 근로자 전체가 육아 휴직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%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1조 3천억~1조 4천억원 예산 소요
 -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% 확대 시 연간 약 2조 1천억~2조 3천억원 예산 소요

□ 3안: 전체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(<부록 표 5>참조)

- 현재 수준의 육아 휴직 이용율(34.2%)을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%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7천억~7천 6백억원의 예산 소요
 -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%로 확대 시 연간 1조 1천억~1조 2천억 예산소요
- 육아 휴직 이용율을 50%로 가정할 경우 월 임금의 50%를 급여로 제공한다면 연간 약 1조~1조 1천억원 예산 소요
 -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% 확대 시 연간 약 1조 6천억~1조 8천억원 예산 소요
- 여성 취업자 전체가 육아 휴직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%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2조 1천억~2조 2천억원 예산 소요
 -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% 확대 시 연간 약 3조 3천억~3조 6천억원 예산 소요

6. 재원 확보 방안

□ 기업의 법인세 인하

- 법인세 인하 분 중 일부를 “부모보험” 재정을 위하여 기여하도록 함
-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비율은 25%로 이는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(아일랜드 12.5%, 싱가포르 20%, 홍콩 17.5%)
- 높은 법인세율로 기업 활동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임

- 법인세 인하를 조건으로 인하분의 일부를 부모보험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기업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
- 지자체 각종 출산 축하금 및 양육 수당 예산을 “부모보험”기금으로 통합하도록 유도
 -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출산 축하금과 양육 수당은 여성의 취업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음
 - 출산률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함께 독려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지원되고 있는 출산축하금과 양육수당을 “부모보험”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
- 부모 보험료 징수
 - 자녀 양육은 국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식 하에 부모보험 재정의 일부분을 사회 보험료의 형태로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함
 -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혼자 및 자녀 양육기(30~40대)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

7. 기대효과

- 현행 육아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수입의 손실 때문에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출산률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
-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급여(최대 수입의 80%)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취업에 강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여성 취업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
- 남성 배우자로 하여금 육아 휴직을 활용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양성 평등적인 부부 관계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부부의 공동참여를 가능하게 함
- 1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자녀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

<부록 표 1> 스웨덴 부모보험지출액의 변동추이 (1995~2006년)

| 연도 | 부모보험지출액 | | GDP 대비비중(%) | 정부지출대비비중 (%)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스웨덴(백만SEK) | 원화기준 | | |
| 1995 | 18,004 | 2조4769억원 | 0.99 | 3.74 |
| 1996 | 14,201 | 1조1995억원 | 0.77 | 2.81 |
| 1997 | 13,282 | 1조8273억원 | 0.69 | 2.58 |
| 1998 | 14,129 | 1조9438억원 | 0.7 | 2.6 |
| 1999 | 15,595 | 2조2145억원 | 0.73 | 2.73 |
| 2000 | 16,844 | 2조3173억원 | 0.75 | 2.88 |
| 2001 | 18,372 | 2조5276억원 | 0.79 | 2.99 |
| 2002 | 20,042 | 2조7573억원 | 0.83 | 3.05 |
| 2003 | 21,970 | 3조3022억원 | 0.87 | 3.18 |
| 2004 | 23,469 | 3조2288억원 | 0.89 | 3.34 |
| 2005 | 24,127 | 3조3193억원 | 0.88 | 3.34 |
| 2006 | 26,094 | 3조5900억원 | 0.9 | 3.42 |

자료) 국회 입법조사처, 전재희 의원실 입법조사회답자료 “스웨덴부모보험제도의 운영현황,
(2008.6.30)

주): 1SEK=137.58원(2007년 평균환율기준)

<부록 표 2> 스웨덴 부모보험제도의 도입연혁 및 변천사

| 년도 | 1인당 GDP(USD) | 부모급여 | 일시부모급여 | 출산율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|------|
| 1974년 | 5,333 | o 부모급여 도입 - 180일간 소득의 90% 지급 | o 일시부모급여 도입 - 가구당 연간 10일, 소득의 90% 지급 | 1.87 |
| 1978년 | 8,538 | o 270일로 연장 - 240일간 소득의 90% 지급 -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| | 1.6 |
| 1980년 | 10,604 | o 360일로 연장 - 270일간 소득의 90% 지급 -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| o 자녀 당 연간 60일로 확대, 소득의 90% 지급 o 아버지출산휴가 도입 - 10일간, 소득의 90% 지급 | 1.68 |
| 1986년 | 15,667 | | o 자녀방문휴가 도입 - 8~12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2일간, 소득의 90% 지급 | 1.8 |
| 1989년 | 18,567 | o 450일로 연장 - 360일간 소득의 90% 지급 -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| | 2.01 |
| 1990년 | 19,334 | | o 자녀당 연간 120일로 확대, 소득의 90% 지급 | 2.13 |
| 1995년 | 21,919 | o 어머니/아버지 달 도입 -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30일간 할당, 소득의 90% 지급 - 300일간 소득의 80% 지급,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| o 일시부모급여 대상 확대 - 부모→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 o 자녀방문휴가 폐지 | 1.73 |
| 1996년 | 22,677 | o 어머니/아버지 달(각각 30일간) 소득의 85% 지급 o 300일간 소득의 75% 지급,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| o 소득의 75% 지급 | 1.6 |
| 1997년 | 23,430 | o 어머니/아버지 달(각각 30일간) 소득의 75% 지급 | | 1.52 |
| 1998년 | 24,267 | o 소득의 80% 지급 | o 소득의 80% 지급 | 1.5 |
| 2002년 | 29,004 | o 480일로 연장(30일간 병가휴가) o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60일간 할당 | | 1.65 |
| 2006년 | 34,870 | | | 1.77 |

자료) 국회입법조사처, OECD factbook(2008)

<부록 표 3> 시나리오 1안: 여성 고용보험가입자 대상 (여성 인구의 15.7%)

(단위: 명, 억원)

| 연도 | 출생아수 | 대상자수 | 이용율 | 이용자수 | 비용(억원) | |
|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| | | 급여수준 50% | 급여수준 80% |
| 2009 | 446,293 | 70,199 | 34.2% | 24,008 | 2,303 | 3,685 |
| | | | 50% | 35,100 | 3,367 | 5,388 |
| | | | 75% | 52,649 | 5,051 | 8,082 |
| | | | 100% | 70,199 | 6,735 | 10,776 |
| 2010 | 440,138 | 69,231 | 34.2% | 23,677 | 2,272 | 3,635 |
| | | | 50% | 34,616 | 3,321 | 5,314 |
| | | | 75% | 51,923 | 4,982 | 7,970 |
| | | | 100% | 69,231 | 6,642 | 10,627 |
| 2011 | 432,334 | 68,004 | 34.2% | 23,257 | 2,231 | 3,570 |
| | | | 50% | 34,002 | 3,262 | 5,219 |
| | | | 75% | 51,003 | 4,893 | 7,829 |
| | | | 100% | 68,004 | 6,524 | 10,439 |
| 2012 | 422,823 | 66,508 | 34.2% | 22,746 | 2,182 | 3,492 |
| | | | 50% | 33,254 | 3,190 | 5,105 |
| | | | 75% | 49,881 | 4,786 | 7,657 |
| | | | 100% | 66,508 | 6,381 | 10,209 |
| 2013 | 412,055 | 64,814 | 34.2% | 22,166 | 2,127 | 3,403 |
| | | | 50% | 32,407 | 3,109 | 4,975 |
| | | | 75% | 48,610 | 4,664 | 7,462 |
| | | | 100% | 64,814 | 6,218 | 9,949 |

주) 여성고용보험 가입자 비율(2007년) = 여성 고용보험피보험자수/15세 이상 여성 인구수 (15.7%), 여성 평균 임금은 월 1,599천원으로 가정 (49세 이하 여성의 평균 임금)

자료) 연도별 출생아 수: 보건복지가족부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(2008) “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,” 여성 고용보험피보험자수: 고용보험통계(2007), 15세이상 여성 인구수: 주민등록인구통계(2007), 여성 평균 임금 수준: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(2007)

<부록 표 4> 시나리오 2안: 여성 임금 근로자 대상 (여성 인구의 33.3%)

(단위: 명, 억원)

| 연도 | 출생아수 | 대상자수 | 이용율 | 이용자수 | 비용(억원) |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| | | 급여수준 50% | 급여수준 80% |
| 2009 | 446,293 | 148,435 | 34.2% | 50,765 | 4,870 | 7,793 |
| | | | 50% | 74,218 | 7,120 | 11,393 |
| | | | 75% | 111,326 | 10,681 | 17,089 |
| | | | 100% | 148,435 | 14,241 | 22,785 |
| 2010 | 440,138 | 146,388 | 34.2% | 50,065 | 4,803 | 7,685 |
| | | | 50% | 73,194 | 7,022 | 11,236 |
| | | | 75% | 109,791 | 10,533 | 16,853 |
| | | | 100% | 146,388 | 14,044 | 22,471 |
| 2011 | 432,334 | 143,792 | 34.2% | 49,177 | 4,718 | 7,549 |
| | | | 50% | 71,896 | 6,898 | 11,036 |
| | | | 75% | 107,844 | 10,347 | 16,555 |
| | | | 100% | 143,792 | 13,795 | 22,073 |
| 2012 | 422,823 | 140,629 | 34.2% | 48,095 | 4,614 | 7,383 |
| | | | 50% | 70,315 | 6,746 | 10,794 |
| | | | 75% | 105,472 | 10,119 | 16,190 |
| | | | 100% | 140,629 | 13,492 | 21,587 |
| 2013 | 412,055 | 137,048 | 34.2% | 46,870 | 4,497 | 7,195 |
| | | | 50% | 68,524 | 6,574 | 10,519 |
| | | | 75% | 102,786 | 9,861 | 15,778 |
| | | | 100% | 137,048 | 13,148 | 21,037 |

주) 전체 여성 임금 근로자 비율(2008년) = 여성 임금 근로자 수 / 15세 이상 여성 인구수 (33.3%), 여성 평균 임금은 월 1,599천원으로 가정 (49세 이하 여성의 평균 임금)

자료) 연도별 출생아 수: 보건복지가족부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(2008) “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,” 여성 임금 근로자수: 경제활동인구조사(2008), 15세이상 여성 인구수: 주민등록인구통계(2008), 여성 평균 임금 수준: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(2007)

<부록 표 5> 시나리오 3안: 여성 취업자 대상 (여성 인구의 52.1%)

(단위: 명, 억원)

| 연도 | 출생아수 | 대상자수 | 이용율 | 이용자수 | 비용(억원) |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| | | 급여수준 50% | 급여수준 80% |
| 2009 | 446,293 | 232,520 | 34.2% | 79,522 | 7,629 | 12,207 |
| | | | 50% | 116,260 | 11,154 | 17,846 |
| | | | 75% | 174,390 | 16,731 | 26,770 |
| | | | 100% | 232,520 | 22,308 | 35,693 |
| 2010 | 440,138 | 229,313 | 34.2% | 78,425 | 7,524 | 12,039 |
| | | | 50% | 114,657 | 11,000 | 17,600 |
| | | | 75% | 171,985 | 16,500 | 26,400 |
| | | | 100% | 229,313 | 22,000 | 35,201 |
| 2011 | 432,334 | 225,247 | 34.2% | 77,035 | 7,391 | 11,825 |
| | | | 50% | 112,624 | 10,805 | 17,288 |
| | | | 75% | 168,936 | 16,208 | 25,932 |
| | | | 100% | 225,247 | 21,610 | 34,576 |
| 2012 | 422,823 | 220,292 | 34.2% | 75,340 | 7,228 | 11,565 |
| | | | 50% | 110,146 | 10,567 | 16,908 |
| | | | 75% | 165,219 | 15,851 | 25,362 |
| | | | 100% | 220,292 | 21,135 | 33,816 |
| 2013 | 412,055 | 214,682 | 34.2% | 73,421 | 7,044 | 11,270 |
| | | | 50% | 107,341 | 10,298 | 16,477 |
| | | | 75% | 161,011 | 15,447 | 24,716 |
| | | | 100% | 214,682 | 20,597 | 32,955 |

주) 전체 여성 취업자 비율 (2008년) = 15~49세 여성 취업자 수/ 15~49세 여성 인구 수 (52.1%), 여성 평균 임금은 월 1,599천원으로 가정 (49세 이하 여성의 평균 임금)

자료) 연도별 출생아 수: 보건복지가족부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(2008) "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," 15~49세 여성 취업자 수: 경제활동인구조사(2008), 15~49세 여성 인구 수: 주민등록인구통계(2008), 여성 평균 임금 수준: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(2007)

참고문헌

- 고용보험통계(2007),
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(2007)
국회 입법조사처, 전재희 의원실 입법조사회답자료 “스웨덴부모보험제도의 운영 현황, (2008.6.30)
국회입법조사처, OECD factbook(2008)
김주숙 (2000) “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,” 한국사회복지학, 40, 68-96.
보건복지가족부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(2008) “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,”
스웨덴 사회보험청(2008) “Social Insurance in Figures, 2008”
신유미, 2008,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-스웨덴 정책을 통한 시사점 모색,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, 2008(1), 44-60.
주민등록인구통계(2007),

International National Security, 2001, "Social security in Sweden"

MEMO

MEMO

MEMO

MEMO

MEMO

